

배포 일시	2022. 11. 27.(일)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실 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4016)
		담당자	사무관 정일웅 (044-201-4018)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7일 17시 기준 상황

□ 화물연대 동향

- 현재 4,000명(전체 조합원의 18.2%)이 13개 지역 124개소에서 분산 대기 중이며, 첫날 대비 집회인원은 5,600명 감소

□ 항만 등 물류 동향

- (항만)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크게 감소하여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 사태 장기화 시 외국 선사들이 국내 항만 기항을 기피하는 등 항만 신인도 저하가 우려되며,
 - 장기화 시 장치율 상승으로 항만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도 초래될 가능성도 있음
 < 컨테이너 장치율 및 반출입량 추이 >

구분	평시 ('22.10)	11.24. 10시	11.24. 17시	11.25. 10시	11.25. 17시	11.26. 10시	11.26. 17시	11.27. 10시	11.27. 17시
장치율 (평시대비 %)	64.5	63.9	64.2	63.5	63.9	63.3	63.7	62.6	62.4
컨테이너 반출입량 (TEU, 평시대비 %)	36,655	69,976 (190%)	14,695 (40%)	18,086 (49%)	10,451 (28%)	13,084 (35%)	6,929 (19%)	6,208 (17%)	2,788 (7.6%)

- 특히, 광양, 평택·당진,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없음

< 광양, 평택·당진, 울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 추이, 단위: TEU >

구분	평시 (22.10)	11.24. 10시	11.24. 17시	11.25. 10시	11.25. 17시	11.26. 10시	11.26. 17시	11.27. 10시	11.27. 17시
광양항	4,014	6,144	22	0	38	0	0	0	0
평택·당진항	1,511	1,954	43	105	34	83	43	74	0
울산항	894	684	8	0	2	0	0	0	0

- (시멘트)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에 그쳐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고 있고,
 - *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현장 중 259개 현장(56%)에서 11.25일부터 레미콘 타설 중단
 - 레미콘 업계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철강, 마감재, 전기, 기계 등 타 산업 업종까지 피해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우려
- (정유) 4대 정유사(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장기화 시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공급 차질
 - 사전 수송으로 이번주 초까지는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상 지속 시 도시 지역 중심으로 공급차질이 발생해 국민 피해 발생 우려
- (철강) 화물차를 이용한 출하는 긴급 물량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철도, 해상운송(10% 미만)만 진행 중으로, 출하량 급감
 -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자동차, 건설, 조선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 전반에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조치사항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4시 경 충남 당진 현대제철 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운송차량의 운송 현황 및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주재 관계기관 상황 점검 회의(17:00) (경찰청, 해수부, 산자부, 고용부, 행안부 등)
-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 중

-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 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중

□ 향후 계획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1.28)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붙임 1

항만별 장치율, 반출입량 동향(11.27. 17:00 기준)

(단위 : TEU, %)

구분	화물 장치율						일일 반출입량						
	장치능력 (A)	장치량		장치율(%)			금일 10사17시 반입 (C)	금일 10사17시 반출 (D)	금일 10사17시 반출입 (C+D)	전일 10사17시 반출입 (E)	평시(‘22.10월 동시간대) 반출입량		
		금일 17시 (B)	전일 (17시)	금일 17시 (B/A)	전일 (17시)	평시 (‘22.10)					반입	반출	합계
합 계	941,283	587,625	600,045	62.4	63.7	64.5	1,510	1,278	2,788	6,929	19,448	17,207	36,655
부산항	592,335	390,274	398,867	65.9	67.3	68	1,444	1,098	2,542	5,863	10,984	9,408	20,392
인천항	112,921	82,898	85,595	73.4	75.8	76.3	13	21	34	832	4,339	3,787	8,126
광양항	110,856	68,865	69,306	62.1	62.5	61.4	0	0	0	0	2,260	2,365	4,625
평택· 당진항	39,281	18,999	19,403	48.4	49.4	59.3	0	0	0	43	860	746	1,606
울산항	29,464	14,483	14,433	49.2	49.0	55	0	0	0	0	614	514	1,128
군산항	8,006	1,194	1,190	14.9	14.9	13.3	30	126	156	0	80	78	158
마산항	3,700	190	174	5.1	4.7	5	15	15	30	0	44	29	73
대산항	8,255	2,066	2,366	25.1	28.7	26	0	0	0	104	87	82	169
포항항	24,041	7,219	7,219	30.0	30.0	26	0	0	0	0	38	57	95
동해항	1,150	350	350	30.4	30.4	26	0	0	0	60	25	25	50
목포항	8,022	438	493	5.5	6.1	5	8	18	26	27	106.8	104.8	211.6
경인항	3,252	649	649	19.9	19.9	22	0	0	0	0	10	11	21

붙임 2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계획

□ 통행료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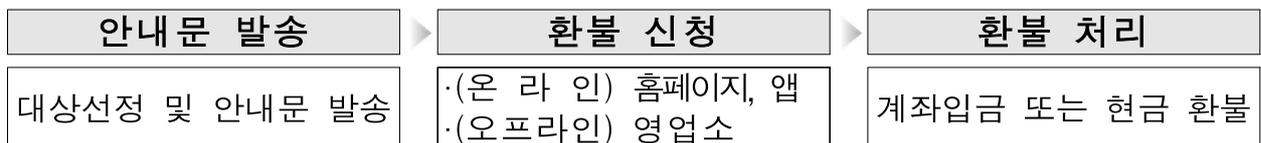
- (면제기간) '22. 11. 24(목) 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까지
 - (면제구간) 고속도로 쏘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 (대상차량)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차량, 비상수송대책 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면제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에 대해서만 면제
 - (면제방법) **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후 **사후 환불**
 - * (선불카드) 사후 충전, (후불카드) 카드사 미청구
 -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 (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제시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 (발급장소)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쏘 영업소** (367개소)
- (발급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포함)
-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방문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출력)

□ 통행료 환불

- (환불대상) 식별표지 발급 차량 중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 * 식별표지 발급 이전 통행료는 소급 적용
- (환불시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안내문 발송 시 별도 안내
- (환불절차)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붙임 3**통행료 면제 식별표지 및 면제확인증 서식**

- 식별표지** : 차량 전면 유리창의 좌측 하단에 부착

No. 예)1-23 (차량부착/게시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차량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면제확인증**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제시

No.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인증

- **사용기간** : 2022. 11. 24. 00:00 ~ 정상화 시까지
- **차량번호** : _____
- **면제구간** : 모든 고속도로(재정·민자 고속도로)
- **이용방법** : 요금소 부스 제출 후 통과

위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임을 확인함

국토교통부장관 (인)

□ 허가 기준

-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 허가 절차

-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 허가 혜택

-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붙임 5
운송거부자 신고 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성명	사무실 연락처	e-mail주소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최용민 주무관	044-201-4018	skrkwk11@korea.kr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박진원 주무관	02-2133-4094	freedom@seoul.go.kr
경기도 물류항만과	강동주 주무관	031-8008-3864	rallyxyzgx57@gg.go.kr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김태경 주무관	051-888-7632	ktkim97@korea.kr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홍형표 주무관	032-440-3832	0326hhp@korea.kr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이미림 주무관	053-803-4041	yml4832@korea.kr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김 건 주무관	062-613-4092	gun1424@korea.kr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김태자 주무관	052-229-4114	taeyeowoo@korea.kr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박준상 주무관	042-270-5832	foolmoon@korea.kr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송창훈 주무관	041-635-2844	chsong1224@korea.kr
충청북도 교통정책과	장은수 주무관	043-220-4265	eielectro@korea.kr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강성진 주무관	061-286-7461	gsj83@korea.kr
전라북도 교통정책과	김대환 주무관	063-280-3621	yotta@korea.kr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김재훈 주무관	055-211-4144	senatus@korea.kr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이희천 주무관	054-880-2667	yi2000@korea.kr
강원도 교통과	함석영 주무관	033-249-3544	hsy3415@korea.kr
제주도 교통정책과	김보윤 주무관	064-710-2465	kbv6089@korea.kr